

의안번호	제 659 호
의 결 연 월 일	2014년 월 일 (제 330 회)

**충청북도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충 청 북 도 지 사
제출연월일	2014년 6월 2일

법무통계담당관 심사를 마칩

충청북도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659
----------	-----

제출연월일 : 2014년 6월 2일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안사유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장(제4조부터 제17조까지) 교육위원회 관련 규정의 유효기간이 2014년 6월 30일까지로 되어있어, 이 법을 근거로 하여 규정된 내용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의회 사무기구의 설치와 사무직원의 정수 근거법령 정비
 - 「지방자치법」 제90조 및 제91조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17조 (안 제1조)
 - ➔ 「지방자치법」 제90조 및 제91조
- 의회 사무직원의 정수 근거조례 정비
 -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와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정원조례」 (안 제5조)
 - ➔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3. 의안전문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관계법령 발췌 : 붙임

6.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충청북도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 「지방자치법」 제90조 및 제91조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17조”를 “ 「지방자치법」 제90조 및 제91조”로 한다.

제5조 중 “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와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한다.

제6조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0조 및 제91조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17조에 따라 충청북도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 사무기구의 설치와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0조 및 제91조에 따라 충청북도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 사무기구의 설치와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0조 및 제91조에 따라 충청북도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 사무기구의 설치와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0조 및 제91조에 따라 충청북도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 사무기구의 설치와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0조 및 제91조에 따라 충청북도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 사무기구의 설치와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무처의 설치 등) ① 충청북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는 의회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 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③ 사무처의 하부조직과 그 사무분장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조 (현행과 같음)	제2조 (현행과 같음)	제2조 (현행과 같음)	제2조 (현행과 같음)
제3조(사무처장) ① 사무처에 사무처장을 둔다. ② 사무처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조 (현행과 같음)	제3조 (현행과 같음)	제3조 (현행과 같음)	제3조 (현행과 같음)
제4조(전문위원) ①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전문위원과 사무보조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② 전문위원은 소속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소속위원회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소관사무를 처리하고, 그 위원회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삭제<2010. 6. 30>	제4조 (현행과 같음)	제4조 (현행과 같음)	제4조 (현행과 같음)	제4조 (현행과 같음)
제5조(직원의 정수)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와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로 정한다.	제5조(직원의 정수)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	제5조(직원의 정수)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	제5조(직원의 정수)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	제5조(직원의 정수)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관련법령 발취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조(교육위원회의 설치) 시·도의회에 교육·학예에 관한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의결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이하 “교육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법률 제10046호(2010.2.26.)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는 2014년 6월 30일까지 유효함]

제17조(교육위원회 사무에 대한 지원) ① 교육위원회 및 시·도의회에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의회 사무처에 지원조직과 사무직원을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두는 사무직원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두는 사무직원은 교육위원회 위원장의 추천에 따라 교육감이 임명한다.

[법률 제10046호(2010.2.26.)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는 2014년 6월 30일까지 유효함]

부 칙 <법률 제10046호, 2010.2.26. >

제2조(유효기간 등) ① 제2장, 제24조제2항 및 제7장은 2014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위원회의 폐지에 따라 2014년 6월 30일 임기만료에 의한 교육의원선거는 실시하지 아니한다.

③ 제24조제2항은 2014년 6월 30일 임기만료에 의한 교육감선거부터 적용하지 아니한다.

□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정원 책정의 일반기준) ① 정원은 정원관리의 단위기관(이하 “단위기관“이라 한다)별로 직급을 정하여 책정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 4.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단위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시·도의회 사무처
2. 본청(직속기관을 포함한다)
3. 지역교육청(지역교육청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4. 공립의 각급 학교

□ 지방자치법

제56조(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위원회의 종류는 소관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처리하는 상임위원회와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처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두 가지로 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

제90조(사무처 등의 설치) ① 시·도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처를 둘 수 있으며, 사무처에는 사무처장과 직원을 둔다.

② 시·군 및 자치구의회의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국이나 사무과를 둘 수 있으며, 사무국·사무과에는 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과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 및 직원(이하 이 절에서 “사무직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제91조(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명) ①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조례로 정한다.

② 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의 추천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무직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은 지방의회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에게 위임하여야 한다.

1. ~ 3. (생략)